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자재판매사 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및 전송자격증 의무화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07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 인증 근거 마련 및 등록시 전송자격인증서 제출 의무화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5.

다. 회부연월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 인증 근거 마련 및 등록시 전송자격인증서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문자재판매사가 방통위로부터 3년 기한인 문자 전송자격을 인증받도록 하고, 문자재판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시 전송자격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4호 신설 및 제22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생략)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u>

제14호나목 중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전송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⑥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4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

-----.

1. ~ 3의5. (생략) <u><신설></u>	1. ~ 3의5. (현행과 같음) <u>3의6. 제22조의11제5항에 따라 전</u> <u>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u>
4. ~ 6. (생략) ②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개요

○ 문자재판매사업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¹⁾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자중계사업자”²⁾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

1) 문자중계사업자(10개사) : KT, LGU+, SKB, 다우기술, 인포뱅크, 쎄텍, 케이피모바일 등 이통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신사업자를 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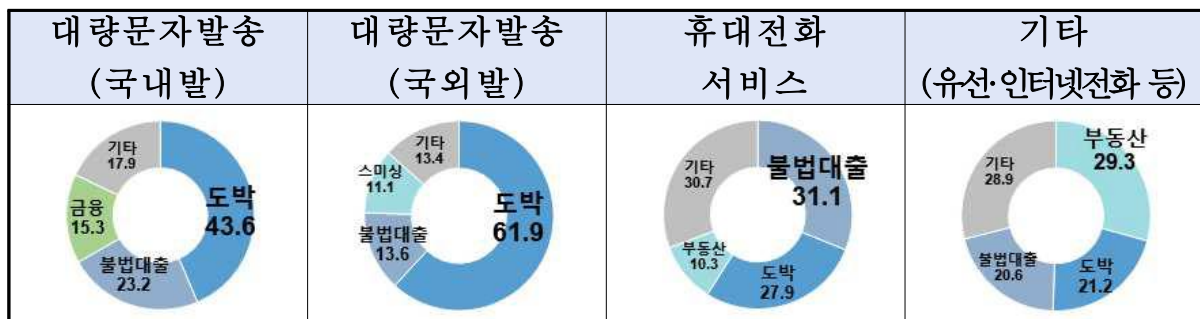
-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함.

○ 현재 문자재판매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자의 난립으로 스팸과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신고·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 (8,420만건 ↑) 증가³⁾하였으며, 발송경로별 신고·탐지 건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국외발 문자스팸이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발송경로별 상위사업자 광고유형별 신고·탐지 비율>

(단위: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2024. 4.

3) (2022년 하반기) 1,277만건 → (2023년 상반기) 1억 89만건 → (2023년 하반기) 1억 8,509만건

□ 검토사항

- 휴대전화 문자 스팸과 관련하여 발송경로별 신고·탐지건수를 보면 국내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8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⁴⁾ 이에 따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적인 규제와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국내발 대량문자 발송스팸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송자격 인증제를 민간 자율규제에서 정부 주도 인증으로 전환하고 검증된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전송자격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송자격 인증 취소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자중계사도 문자재판매업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스팸문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문자재판매업을 겸하는 문자중계사도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4) 2023년 하반기 기준 국내발 대량문자발송서비스(81.2%), 국외발 대량문자발송서비스(16.7%), 휴대전화 서비스(2.1%)

경영하려는 자”도 개정안 규율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시 전송자격인증서 제출 의무화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의 영업 정지 등 전반적인 법안 내용에는 동의하나, 문자중계사도 의무적으로 전송자격을 인증을 받도록 의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인증 유효기간(안제22조의11제3항)의 경우 스팸신고를 통해 문자재판매사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 필요하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제50조의8까지의 위반등 사업자 행정처분,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로서 기 시행중인 전송자격인증제를 취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전송자격취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추가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자중계사도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이 아닌 기준 미달 등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외에 시정조치 등 완화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는 현재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소관의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방통위 주관의 인증제를 또다시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처리의 신속성·일관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여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5